

서울특별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1065호
- 발 의 자 : 노승재·오한아 의원(찬성자 11명)
- 발의일자 : 2019년 10월 16일
-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2. 제안이유

-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바둑지도자, 바둑전문기사, 바둑단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바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
-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안 제7조)
- 시장은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함.(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바둑 진흥법」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라남도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타사항 : 조례안 참조

5. 검토의견

가. 제정 목적

- 동 조례안은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된 제정안으로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상위법인 「바둑 진흥법」은 인공지능 기능을 가진 알파고와의 바둑 대전 이후 사람중심의 바둑진흥 및 문화육성을 위해 제정되었고, 바둑진흥 사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있는 바, 조례 제정 필요성이 인정됨.

나. 주요 조문별 검토

- 조례안의 목적 또는 취지를 규정한 목적규정은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조문의 구체적인 의미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으로

제1조(목적)에서 서울특별시의 바둑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명시하고 있음.

바둑은 전통문화이자 대표적인 두뇌스포츠로서 국제적으로도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바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아져 지속적으로 바둑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확대, 건강한 정신함양 및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고자 「바둑 진흥법」(’18.4.)이 제정되어 시행중임.

「바둑 진흥법」 제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바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바둑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관련 법령

- 「바둑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바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바둑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조(정의규정)은 해당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 「바둑 진흥법」 제2조에 따라 “바둑지도자”, “바둑전문기사”, “바둑단체”를 정의하고 있음. 다만 상위법률명과 관련 조문인용의 띄어쓰기에 대한 수정¹⁾이 필요함.

「서울특별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둑지도자”란 「바둑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바둑전문기사”란 「바둑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바둑단체”란 「바둑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제기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바둑진흥법」을 「바둑 진흥법」으로 하고 ‘제2조 제1호’를 ‘제2조제1호’로, ‘제2조 제2호’를 ‘제2조제2호’로, ‘제2조 제3호’를 ‘제2조제3호’로 함.

관련 법령

■ 「바둑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둑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바둑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2. "바둑전문기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둑 실력 검증대회를 통과하여 바둑 전문가 집단의 바둑 경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직업적으로 각종 바둑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둑단체"란 바둑의 발전·교육·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에서 바둑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책무를 규정함. 현재 서울시는 '바둑 진흥'을 위한 시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조례 제정 이후 기본정책 수립을 통해 바둑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제5조(사업)에서 바둑관련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사업, 바둑의 교육·보급 사업, 바둑지도자의 교육·양성 사업, 바둑 국제 교류·협력 사업, 그 밖에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통해 바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제6조(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에서 필요한 경우 바둑전용 경기장 조성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국내 최초의 바둑전용경기장 건립을 추진(2020년 준공 목표)하고 있으며 서울에는 경기장 조성 계획이 없는 상태임.

- 제7조(지원)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제8조(협력체계 구축)에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9조(포상)에서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근거를 「서울특별시 포상 조례」로 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는 제정된 바가 없고 그 의미와 목적이 표창에 더 적합한 바, 조 제목을 수정하고 근거 조례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로 수정이 필요함.

제 정 안	수 정 안
<p>제9조(포상) ① 시장은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p>	<p>제9조(표창) ① 시장은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p>

다. 종합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바둑 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고 내용과 형식에 큰 흠결이 없어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바둑은 전통문화이자 대표적인 두뇌스포츠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여 이미 경기도,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타 자치단체에도 유사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타시도 제정 현황>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군 바둑 진흥 지원 조례	2019.10.17.
경기도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2018.11.13.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바둑 진흥 조례	2019.10.15.
전라남도 신안군	신안군 바둑 진흥 조례	2019. 3.20.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군 바둑 진흥 조례	2019. 4.11.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2019. 4.11.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	2019.11. 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2019.10.10.

다만 목적과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 「서울특별시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 59개 종목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어 특정 체육종목 및 단체를 진흥하기 위한 지원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것은 특혜적 입법으로 보일 소지가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